사천시 공고 제2019-1218호

보상계획 (열람)공고

우리시에서 시행하는「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1월 14일

사 천 시 장

1. 사 업 개 요

가. 사 업 명: 케이블카 버스주차장 확장사업

나. 위 치: 사천시 대방동 지내

다. 사업내용: 주차장 A= 4,357㎡

라. 사업기간: 착공일로부터 12개월

마. 사업시행자: 사천시장

2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

가. 토지: 경남 사천시 대방동 659번지외 7필지 4,357㎡(편입 토지조서 붙임)

나. 물건: 위 편입 토지상의 지장물건 일체(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)

3. 토지 ·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(공고)기간: **2019. 11.14. ~ 2019. 11.29.(15일간)**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: 사천시청 관광진흥과[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, 8층]

다. 이의신청: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**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**할 수 있음.

라. 이의조치: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, 이의신청자에게 조치내용 통보

마.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확정: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,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.

4. 보상계획

가. 보상시기: 2020. 1월 중 (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)

나. 보상방법: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에 의거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

다. 보상절차: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협의(계약체결)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통장으로 계좌입금

※ 보상계획 열람공고 ⇒ 감정평가 ⇒ 보상액산정 ⇒ 보상협의요청 ⇒ 협의(계약체결) ⇒ 보상금 지급 ⇒ 수용재결(협의불성립시) ⇒ 보상액공탁

라. 협의조건: 토지 및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이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.

마.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(1인) 추천 안내

1) 시·도지사 추천요건

가) 감정평가 수행능력,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, 감정평가 실적,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

나)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

다)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

라)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·도지사가 협의 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

2) 토지소유자 추천요건: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

3) 추천기한: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

4) 추천제한: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가. 보상대상 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(☏ 055-831-27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